

본회의 회의록

| | | |
|-----|-----|-----|
| 간 사 | 위원장 | 학교장 |
| | | |

- 일시 : 2016년 5월 30일(월) 오전 16시30분
- 장소 : 본교 회의실

- 회순
 - ▶ 제2차 운영위원회
 - 안건자문
 1. 방과후학교 학습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5.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
 6.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
 8.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1.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보고
 - 기타사항

- 간사(○○○): 12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참석, 3명의 위원이 불참하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학교를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중략)
- 위원장(○○○):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쁜신 와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중략)
- 위원장(○○○):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모두 8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술과부터 전공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준 학부모위원께서 회의에 불참 하시어 간서명은
- 미술부장(○○○): 미술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음악부장(○○○): 음악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교원위원(○○○): 미술과는 강사료가 50,000원이고 음악과는 45,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행정실장(○○○): 강사료는 전공의 특성에 맞게 전공별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1. 미술과 방과후 교육활동비(기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1학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수업 | 수업일수 | 수업요일 | 반수 | 총인원 | 희망인원 | 총시간 | 1인당 수업료 |
|-------|------|------------|-----|------|------|------------------|----------|
| 방학컴퓨터 | 8일 | 월, 화, 목, 금 | 1반 | 124명 | 24명 | 32시간(8일×4시간×1인) | 74,600원 |
| 소묘 | 13일 | 수/월, 화, 수 | 10반 | 124명 | 108명 | 52시간(13일×4시간×1인) | 269,600원 |
| 전공 | 14일 | 목/목, 금, 토 | 12반 | 124명 | 114명 | 56시간(14일×4시간×1인) | 330,100원 |
| 소묘보충 | 7일 | 화 | 1반 | 124명 | 11명 | 28시간(7일×4시간×1인) | 142,500원 |

* 고지액 산출방법 : (총시간×반수×50,000원)+(관리비0.12)÷희망인원

[2학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수업 | 수업일수 | 수업요일 | 반수 | 총인원 | 희망인원 | 총시간 | 보조강사 인건비 | 1인당 수업료 |
|-------|------|------|----|-----|------|------------------|----------|----------|
| 소묘(동) | 14일 | 목 | 3반 | 25명 | 24명 | 56시간(14일×4시간×1인) | 전공과 동일 | 392,000원 |
| 소묘(서) | | | 3반 | 39명 | 38명 | | | 247,500원 |
| 소묘(조) | | | 2반 | 19명 | 18명 | | | 348,400원 |
| 소묘(디) | | | 3반 | 40명 | 37명 | | | 254,200원 |
| 동양화 | 14일 | 화 | 3반 | 25명 | 25명 | 56시간(14일×4시간×1인) | 16,000원 | 376,600원 |
| 서양화 | | | 3반 | 39명 | 39명 | | 12,500원 | 241,200원 |
| 조 소 | | | 2반 | 19명 | 19명 | | 20,200원 | 330,100원 |
| 디자인 | 21일 | 화, 수 | 3반 | 40명 | 39명 | 84시간(21일×4시간×1인) | 11,100원 | 361,800원 |

* 고지액 산출방법 : (총시간×반수×50,000원)+(관리비0.12)÷희망인원

* 보조강사인건비는 2과목(전공, 소묘) 수강 시 1과목에만 부과됩니다.

[3학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수업 | 수업일수 | 수업요일 | 반수 | 총인원 | 희망인원 | 총시간 | 보조강사 인건비 | 1인당 수업료 |
|-------|------|------|----|-----|------|------------------|----------|----------|
| 소묘(동) | 14일 | 화 | 2반 | 26명 | 26명 | 56시간(14일×4시간×1인) | 전공과 동일 | 241,200원 |
| 소묘(서) | | | 3반 | 37명 | 34명 | | | 276,700원 |
| 소묘(조) | | | 2반 | 20명 | 17명 | | | 368,900원 |
| 소묘(디) | | | 3반 | 35명 | 30명 | | | 313,600원 |
| 동양화 | 16일 | 목 | 2반 | 26명 | 26명 | 64시간(16일×4시간×1인) | 16,000원 | 275,600원 |
| 서양화 | | | 3반 | 37명 | 34명 | | 12,500원 | 316,200원 |
| 조 소 | | | 2반 | 20명 | 19명 | | 20,200원 | 377,200원 |
| 디자인 | | | 3반 | 35명 | 30명 | | 11,100원 | 358,400원 |

* 고지액 산출방법 : (총시간×반수×50,000원)+(관리비0.12)÷희망인원

* 보조강사인건비는 2과목(전공, 소묘) 수강 시 1과목에만 부과됩니다.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3학년 추가] - 2016년 6월 1일 ~ 7월 19일까지

| 수업 | 수업일수 | 수업요일 | 반수 | 총인원 | 희망인원 | 총시간 | 1인당 수업료 |
|-------|------|------|----|-----|------|-----------------|----------|
| 소묘(동) | 5일 | 화 | 2반 | 26명 | 19명 | 15시간(5일×3시간×1인) | 88,400원 |
| 소묘(서) | | | 2반 | 37명 | 19명 | | 88,400원 |
| 소묘(디) | | | 2반 | 35명 | 10명 | | 168,000원 |
| 소묘(조) | 4일 | 월 | 1반 | 20명 | 5명 | 12시간(4일×3시간×1인) | 134,400원 |
| 동양화-1 | 6일 | 수 | 2반 | 26명 | 18명 | 24시간(6일×4시간×1인) | 149,300원 |
| 동양화-2 | | 목 | 2반 | | 20명 | 18시간(6일×3시간×1인) | 100,800원 |
| 서양화-1 | | 목 | 2반 | 37명 | 22명 | 18시간(6일×3시간×1인) | 91,600원 |
| 서양화-2 | | 금 | 1반 | | 8명 | 24시간(6일×4시간×1인) | 168,000원 |
| 조 소 | | 목 | 2반 | 20명 | 17명 | 18시간(6일×3시간×1인) | 118,500원 |
| 디자인 | | 목 | 2반 | 35명 | 10명 | 18시간(6일×3시간×1인) | 201,600원 |

* 고지역 산출방법 : (총시간×반수×50,000원)+(관리비0.12)÷희망인원

2. 음악과 방과후 교육활동

가. 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6년 8월 31일(6.7,8월분)

| 구분 | 기간 | 대상 | 특기적성 교육비 (1인당)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 레슨비 | 3개월 | 1,2,3학년 | 240,000원 | -1개월 단위로 학생들의 강사선생님 배정 및 미정 상태 변경 | -3개월(1분기)단위로 학생들의 강사선생님 배정 및 미정의 상태고정(중도 변경 불가) | 2분기 부터 시행 |
| 방과후학교 수업비 | 2개월 | 1,2,3학년 | 49,500원 | -1개월 단위로 학생들이 직접 교육비 납부 | -2개월 단위로 CMS 자동 출금 | |

나. 관현악전공 방과후학교

- 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7월13일(수)

| 과목 | 대상 | 인원 | 총시간 | 1인당 수업료 | 비고 |
|-------|--------------|-----|------|---------|----|
| 관현악합주 | 관현악전공 1, 2학년 | 89명 | 81시간 | 47,000원 | |

* 고지역 산출방법 : (총시간×45,000원)+(관리비0.15)÷희망인원

-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은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부장(○○○):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

| 현행 (2014년) | 학교규칙 수정 (2016년) | 수정 사유 |
|--|---|---|
| 제7조(휴업일) | 제7조(휴업일)②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 - 재량휴업일 근거 추가 |
| 제7조(휴업일)② 학교장은 제1항 ~ | 제7조(휴업일)③ 학교장은 제1항 ~ | -조항번호 변경 |
| 제13조(수업운영)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운영)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학교장 허가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 |
| 제14조(수업일수)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 | 제14조(수업일수)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 | -명칭 표기 방식 수정 |
| 제19조(입학시기)①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9조(입학 시기 등)①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 고등학교 입학 시기 규제완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개정(2015.1.6.)). 제92조(고등학교 준용)) |
| 제22조(전·편입학)①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전·편입학)①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다. | -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른 변경 |
| 제22조(전·편입학)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22조(전·편입학)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 -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른 변경 |
| 제22조(전·편입학)③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삭제> | -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른 변경 |
| 제22조(전·편입학) ④본교의 전·편입학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삭제> | -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른 변경 |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현행 (2014년) | 학교규칙 수정 (2016년) | 수정 사유 |
|---|--|---|
| 제24조(자퇴) ①스스로 퇴학(자퇴라 하고 타 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 | 제24조(자퇴) ①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 | -오류내용 수정 |
| 제24조(자퇴) ②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 제24조(자퇴) ②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 의 숙려기간을 둔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 변경 |
|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삭제> | -제28조 2항과 중복됨 |
|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015 고등학교 규칙 표준안에 따름 |
| 제33조(학교생활규정) | 제33조(학교생활 인권 규정) | - 경기도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명칭을 전체학교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 제33조(학교생활규정)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삭제> | - 제33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수정하고 ①항은 삭제 |
| 제33조(학교생활규정)②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의 생활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제33조(학교생활 인권 규정)①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의 생활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 명칭 변경 및 조항 변경 |
| 제33조(학교생활규정)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3조(학교생활 인권 규정)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명칭과 조항 변경 및 의견 수렴 대상 추가 |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현행 (2014년) | 학교규칙 수정 (2016년) | 수정 사유 |
|---|---|------------------------------|
| 제35조(징계) ③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35조(징계) ③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 ,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해당 부서(진로지원과)에서 명칭 변경하여 사용 |
| 제35조(징계) ④제1항 4 <u>회</u> 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제35조(징계) ④제1항4 <u>회</u> 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 철자 오류 수정 |
| 제38조(학생자치활동) 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제38조(학생자치활동) 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 2015 고등학교 규칙 표준안에 따라 단어 추가 |
| 제41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u>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u> | <삭제> | - 제43조(학생의 의무)와 중복 내용 |
| 제42조(학생회 운영규정) <u>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u> | <삭제> | - 제38조 2항과 중복 |
| 제43조 (학생의 의무) | 제41조 (학생의 의무) | - 조항 변경 |
| 제44조 (학부모회의 설치) | 제42조 (학부모회의 설치) | - 조항 변경 |
| 제45조 (학칙개정 절차) | 제43조 (학칙개정 절차) | - 조항 변경 |

- 위원장(○○○): 세 번째 안건은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부장(○○○):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학생들 보험과 안전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 1학년부장(○○○): 학생 여행자 보험은 종합으로 가입 합니다. 안전계획은 수련회가 출발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교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학부모위원(○○○): 체험활동 활성화위원 학부모님들께서도 현장 답사를 하셨습니까?
- 1학년부장(○○○): 활성화위원 학부모님들께서도 현장 답사를 가셨어야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여, 1학년 담임교사들중에서 2명의 교사가 답사를 실시한 다음에 현장 사진을 찍어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학부모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선생님들께서는 몇 명이 동행을 하십니까?
- 1학년부장(○○○): 학생부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8명이 체험활동을 참여합니다.
- 위원장(○○○): 테마형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을 합니까?
- 1학년부장(○○○): 체험활동을 가지 않은 선생님들로 별도의 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체험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체크 및 수업을 진행합니다.
- 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

1.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

- 가. 일시 : 2016. 7. 6. (수) ~ 7. 8. (금) 2박 3일
- 나. 장소 : 경기도 안성(엄마수련원)
- 다. 대상 : 계원예술고등학교 1학년
- 라. 1인당 예상경비 : 금 135,000원(320명: 2016. 5.30일 기준)
- 마. 예상경비 내역

| 항목 | 수량 | 예상단가 | 합계 | 비고 |
|---------------------|----|--------------------|-----------------|------------------------|
| 숙박비 | 2박 | 15,500원 | 31,000원 | |
| 식사비 | 7식 | 5,500원 | 38,500원 | 7식 |
| 시설사용료 및 수련비 | 2일 | | 44,000원 | |
| 숙박, 식사, 수련비 합계(1인당) | | | 113,500원 | |
| 교통비 | 8대 | | 15,000원 | 금호고속 왕복: 4,800,000원 |
| 예비비 | 1인 | 6,500원 (보험비 포함) | 6,500원 | 예상 보험비: 2,000원 |
| 교통, 예비비 합계(1인당) | | | 21,500원 | |
| 계 | | | 135,000원 | |

※ 교통비와 예비비(보험비 포함)의 경우, 참여 학생수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환불 규정

- 최종 참가 인원 결정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단체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ex. 버스 대절비)에 대해서는 비용 징수 이후 환불이 불가 할 수 있음.
- 최종 참가 인원 결정 후, 재신청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수련활동 출발 3일전까지만 신청 받는다. (이유: 보험가입)
- 참가 미희망시에는 학교로 등교하여 대체 수업 진행

- 위원장(○○○): 네 번째 안건은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부장(○○○):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 행정실장(○○○): 1학년 및 2학년 체험활동에 동행하는 선생님들의 여행경비는 전액 학교회계에서 부담 합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 학부모위원(○○○): 음악과에서 주제별 체험활동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 ◎ 2학년부장(○○○): 현재 희망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학생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 ◎ 학부모위원(○○○): 3월에 실시한 학부모 총회에서 수학여행이 없어졌다가 미술과 학생들이 원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같이 출발해도 일정과 숙소가 달라 음악과는 체험활동을 안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무용과 경우는 2박 3일로 가면 학생들이 살이 찌서 다이어트하기 힘들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과가 분리되어 있고 학생들이 전공별로 일정을 수행 하므로 체험 활동을 전공별로 실시하는 쪽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 교장(○○○): 미술과 학생들이 원해서 제가 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학생과 담당 선생님께서 2학년 전체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90% 이상 찬성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이며, 교장 독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며,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교원위원(○○○): 본교는 예술학교라 학생들이 전공별로 공연 및 캠프 활동을 많이 하므로 학년 전체가 아닌 전공별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 했으면 합니다.
- ◎ 학부모위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 학창시절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때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보니, 학생이 허무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연습실, 1박 2일 공연을 간다고 하더라도 전공수업과 연계되어 순수하게 2박3일 휴가를 얻는다는 느낌인데, 수학여행이 불편함도 있고 어느 정도 학생들도 감수하는 부분도이겠지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교장(○○○): 학생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갈 수도 있고, 안 갈 경우 위약금도 발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 안하는 학생들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버스임대료는 인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당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부장이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소 권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본질과 달리 전달이 되어 학생에게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위원들께서는 체험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일반 학부모님들께 이해시키고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2학년부장(○○○): 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박3일 좋은 일정을 짜고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만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해보자 같이 아우르듯 이런 행동이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학생들이 강요라고 느꼈다고 했다면 학생의 개인적인 입장이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선생님들이 정정해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참여를 하는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생기부에 체험활동에 관련하여 기록이 전부 들어갑니다.

| | | | |
|------|-----------|------------|------------|
|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간서명란 | | | |

● 음악부장(○○○): 담임선생들께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음악 전공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어떤 반은 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험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부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업체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선생님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음악전공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꼭 가야된다. 담임 선생님이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부정적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 학부모위원(○○○): 이번에는 학생들이 과별로 같은 숙소를 쓰는걸 보니 학생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기에 이번 체험활동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의견은 다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

1. 테마형 체험활동

가. 일시 : 2016. 7. 6. (수) ~ 7. 8. (금) 2박 3일

나. 장소 : 제주도 일대

다. 대상 : 계원예술고등학교 2학년

라. 징수 예정 금액 (1인당)

(단위 : 원)

| 그 룹 | 항공료 | 버스이용 | 숙식(2박3식) 중식(3식) 석식(1식) | 입장료 | 안전요원, 야간 숙소관리 | 기타 (보험, 예비비 등) | 합계 |
|--------|---------|--------|------------------------------|--------|------------------|----------------------|---------|
| 미술과 | 185,000 | 30,000 | 129,000 | 34,000 | 22,000 | 6,000 | 406,000 |
| 음악과 | | | | 32,000 | | | 404,000 |
| 무용, 연영 | | | | 33,000 | | | 405,000 |

2. 환불 원칙

가. 각종 취소 수수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은 환불 불가

나. 단체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ex. 버스 대절비) 환불 불가

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와 추후 협의 예정

● 위원장(○○○): 다섯 번째 안건은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부장(○○○):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위원장(○○○): 작년에 비해 전형료 차이가 있습니까?
- 음악부장(○○○): 참가 전형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

1. 2016학년도 실기대회 전형료 징수계획

| 대회명 | 참가자격 | 전형료 | 개최일자 |
|-----------------------|---------------------------|-----------------------------------|------------------------------|
| 제8회 계원전국중학생 음악콩쿠르 | 중학생(1,2,3학년) | 80,000원 | 예선: 9.23.(금) 본선: 9.24.(토) |
| 제36회 전국 초중학생무용경연대회 | 초등학생(1~6학년) 중학생(1~3학년) | 개인: 80,000원 단체(2인이상): 100,000원 | 7.23.(토) |

- 위원장(○○○): 여섯 번째 안건은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위원님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 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1. 사업용도 변경

-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2016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고자 함.

| 구분 | 2015년 | 2016년 | 변경 | 비고 |
|-----|----------------------|-----------------|----------------------|----|
| 사업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
| 금액 | 430,000,000원 | 430,000,000원 | 430,000,000원 | |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사업변경 기탁서를 받고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변경(안)으로 집행하고자 함.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2. 사업변경 내역

(단위: 천원)

| 발전기금 | | 학교회계전출 금액 | 사용 내역 | | | 비고 | |
|--------------------|---------|--------------|----------------------|---------------------|---------|---------|--|
| 사업 명 | 금 액 | | 사업 명 | 사업내용 | 금 액 | | |
|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430,000 | 430,000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 | 100,000 | | |
| | | |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 탄성고무 설치 (체육관 옥상) | 34,000 | | |
|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 녹음실 및 합주실 장비 구축 | 227,000 | | |
| | | | | 피아노 구입 | 48,000 | | |
| 합 계 | 430,000 | 430,000 | 합 계 | | 21,000 | 430,000 | |

- 위원장(○○○): 여섯 번째 안건은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위원님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실용음악실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행정실장(○○○):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녹음 및 음향설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교과활동 예산이 전공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실장(○○○): 방금 전에 심의한 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하는 예산이 실용음악실 관련 교구 확충 및 기자재, 악기 등 구입비용으로 편성되어 일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용음악실은 음악전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공들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800,000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 행정실장(○○○): 201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사회 심의가 종료된 후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 1,2월달 수석교사 연구 활동비가 지원되어,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사립학교는 3월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 하라고 전달 받아 이번 회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 교원위원(○○○): 기본적 교육활동에서 기타교과과라고 하면 전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교과를 말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거 같습니다.
- 행정실장(○○○): 1차 추경 예산은 증액된 부분만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일반교과도 부장선생님들에게 추경예산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별도로 받은 요청서는 없었습니다.
- 교원위원(○○○): 실장님께서 예산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교과에도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위원(○○○): 음악과 마스터클래스는 방과후에 진행되는 것 입니까?
- 행정실장(○○○): 마스터클래스는 정규교과 시간에 진행됩니다.
- 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위원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 ▣

1.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 경정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감 |
|-------|------------|------------|---------|
| 세입·세출 | 11,547,087 | 10,720,756 | 826,331 |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 장관항목 | 경정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단위: 원) |
|------|------------|------------|---------|--|
| 이전수입 | 1,403,272 | 877,417 | 525,855 | 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41,522,000원 ① 성남형학교 교육지원사업 : 30,758,000원 ② 지방자치단체 학비지원 : 10,764,000원 2.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 187,075,000원 ① 미술실기동 배관교체비 : 124,563,000원 ② 영재교육원 운영비 : 36,000,000원 ③ 교육급여 지원 : 17,573,000원 ④ 조리사 인건비 지원 : 5,037,000원 ⑤ 기타 지원 : 3,902,000원 3. 기타이전수입 : 297,258,000원 ① 법인이전수입 : -140,509,000원 - 학생장학금 지원 : -82,477,000원 - 교육공무직원 부담금 : -58,032,000원 ② 학교발전기금 이전수입 : 437,767,000원 - 학생장학금 : 100,000,000원 - 학교교육 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충 : 337,767,000원 |
| 자체수입 | 9,787,943 | 9,730,775 | 57,168 | 1. 등록금 : 32,520,000원 2. 행정활동수입 : 24,648,000원 ① 운동장 사용료 : 15,000,000원 ② 카드포인트 환급 : 9,498,000원 ③ 무인경비 보증금 환급 : 150,000원 |
| 기타수입 | 355,872 | 112,564 | 243,308 | 1. 전년도이월금 : 243,308,000원 |
| 합 계 | 11,547,087 | 10,720,756 | 826,331 | |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나. 세출예산

(단위: 천원)

| 장관항목 | 경정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단위: 원) |
|-----------------|------------|------------|---------|--|
| 인적자원 운영 | 4,269,915 | 4,239,637 | 30,278 | 1.기타 교직원보수(산학겸임교사) : 22,998,000원 2.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 7,280,000원 ①행정직원 자율연수비 : 1,780,000원 ②교직원 맞춤형복지비 : 5,500,000원 |
|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 1,566,951 | 1,525,681 | 41,270 | 1.급식관리 : 9,037,000원 2.교육격차해소 : 27,437,000원 3.학생복지 : 4,796,000원 ①학생장학금 : 4,394,000원 ②교과서 지원 : 402,000원 |
| 기본적교육활 동 | 1,797,162 | 1,319,438 | 477,724 | 1.교과활동 : 477,724,000원 ①체육교과활동 : 46,000,000원 ②미술과 교과활동 : 21,930,000원 ③음악과 교과활동 : 144,600,000원 ④무용과 교과활동 : 14,700,000원 ⑤연극영화 교과활동 : 29,700,000원 ⑥컴퓨터 음악실운영 : -11,010,000원 ⑦실용음악실 녹음실 및 음향관리시스템 : 227,000,000원 ⑦기타교과 : 4,804,000원 |
| 선택적교육활 동 | 2,637,788 | 2,571,030 | 66,758 | 1.기타선택적교육활동 : 66,758,000원 ①영재교육원운영 : 36,000,000원 ②성남형학교 운영 : 30,758,000원 |
| 교육활동 지원 | 223,214 | 208,814 | 14,400 | 1.교무학사운영 : 7,250,000원 2.생활지도운영 : 2,700,000원 3.학습지원실운영 : 4,450,000원 ①정보화실운영 : 3,650,000원 ②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800,000원 |
| 학교일반 운영 | 897,261 | 836,156 | 61,105 | 1.학교기관운영 : 25,395,000원 ①행정실운영 : 5,438,000원 ②행정지원인력운영 : 19,957,000원 2.시설장비유지 : 34,960,000원 ①시설관리용역 : 30,280,000원 ②소방시설관리 : 6,600,000원 ③시설일반관리 : -3,400,000원 ④예술관운영 : 1,480,000원 3.학교운영 협력 : 750,000원 |
| 학교시설 확충 | 144,796 | 0 | 144,796 | 1.부스터 펌프 및 배관교체 : 110,583,000원 2.세면기 교체 : 13,980,000원 3.시설물 대수선비 : 20,233,000원 |
| 학교 재무활동 | 10,000 | 20,000 | -10,000 | |
| 합 계 | 11,547,087 | 10,720,756 | 826,331 | |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위원장(○○○): 여덟 번째 안건은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위원님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중략)
-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동의
- 위원장(○○○):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

1. 추천위원 변경

| 구분 |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 변경 | | 비고 |
|------|-------------------|----------|----|
| | 변경전 | 변경후 | |
| 추천위원 | ○○○ 행정실장 | 허호경 행정계장 | |

- 위원장(○○○): 이상으로 8건의 안건 심의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보고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사(○○○):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보고에 관하여 설명하다.(중략)
- 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실장(○○○): 우선 지난주에 교실 및 실기실 에어컨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학생들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부터 가동을 했어야 했는데, 에어컨 청소를 입찰로 진행하다보니, 낙찰된 업체에게 한주 앞당겨서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힘들다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기간에 청소가 가능하다 하여 청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내년부터는 미리 서둘러 진행하여 학생들 및 선생님들께서 보다 쾌적하게 수업을 있도록 에어컨을 미리 청소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적정 온도라는 것이 외부, 실내 온도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행정실장(○○○): 실내 정적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26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학부모위원(○○○): 운동장공사로 인해 먼지가 많이 들어와 학생들이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내 적정온도는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 행정실장(○○○): 학생의 교실은 24도로 맞춰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실은 교육청 기준 온도인 28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위원(○○○): 각과의 학생 실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 공사기간에는 학부모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간식 및 음료 챙기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을 배송을 하는 차량은 통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실장(○○○): 행사가 있을 경우, 행정실에 차량번호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정문 경비실에 전달하여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짐만 내리고 차량을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2016년도 간서명자로 선정되신 조남준 학부모위원께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시어 2차 회의록 간서명은 ○○○ 학부모위원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제2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 학부모님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다른 건의사항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 9명

- 학부모위원 : ○○○, ○○○, ○○○, ○○○
- 교원위원 : ○○○, ○○○, ○○○, ○○○
- 지역위원 : ○○○

● 참석교직원: 행정실장 ○○○, 교감 박한규, 미술부장 ○○○, 음악부장 ○○○, 교무부장 ○○○
1학년부장 ○○○, 2학년부장 ○○○, 영양사 ○○○

기록자 : 간사 ○ ○ ○ (인)

| 간서명란 |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 |
|------|-----------|------------|------------|
| | | | |

2016학년도 제2차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 | | |
|----|-----|-----|
| 간사 | 위원장 | 학교장 |
| | | |

- 개최일시 : 2016. 5. 30.(월) 16:30
- 개최장소 : 회의실
- 참석인원 : 9/12 (참석수/정수)

▶ 제2차 운영위원회

1. 방과후학교 학습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1학년 테마형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5.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
6.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
8.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1.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보고

● 기타사항

● 안건자문

1. 방과후학교 학습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미술부장 ○○○, 음악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 학습
2. 학교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교무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 규칙 변경
3. 1학년 테마형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1학년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1학년 테마형 수련활동에
4.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2학년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5. 전국 초·중학생 실기(음악·무용)대회 전형료 징수에 관한사항
 - ▶ 제안 설명자 : 음악부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전국 초·중학생 실기대회 전형료 징수
6.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
7.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제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8.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 ▶ 제안 설명자 : 행정실장 ○○○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위원전원 동의) ▶ 중요 질의내용 : 개방형(이사·감사) 추천위원 변경

● 보고사항

1. 6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보고

▶ 회의록 첨부

위의 자문 결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간사 : ○ ○ ○ (인)